

고려대학교

2024.12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신설 안내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의

학사과정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의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것

단계표



수료와의 차이점

구분	수 료	유 예
대상	학위수여 요건 중 특별졸업요건(한자, 영어, 인권과성평등 교육 등)만 미충족한 학생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신청	신청 불필요 (자동 수료 처리됨)	신청 필요
수강	수료 중 강의 수강 불가	수강유예 시 강의 수강 가능
학적 변동	수료 이후 졸업 외 다른 학적변동 불가 (유예 신청도 불가)	졸업하거나 수강유예 / 미수강유예로 학적변동 가능

신청 대상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학생으로서 계속 수학하기를 원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 신청 제한 대상자

- 재학연한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
- 수료생, 휴학생, 해당 학기 조기졸업 신청자
- 계약학과 및 의과대학 소속 학생
- 복수전공 진입 예정자 및 이수 중인 자 (복수전공 진입예정자는 추후 복수전공 진입 후 복수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한 이후 잔여 재학연한 내 유예 신청 가능하며, 복수전공 이수 중 중도 포기 시 유예 신청 불가하며 당해 학기 졸업 일정에 따라 졸업 처리됨)
-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신청 제한은 없으나 유예가 승인되더라도 비자가 연장되지 않으니 신청 시 유의

유예 유형

구 분	1 수강유예		2 미수강유예	
수강신청 여부	정규학기 및 계절수업 수강신청 가능		수강신청 불가	
수강신청 기간	<mark>신·편입생 수강신청기간</mark> 에 맞추어 수강신청			
	(1) 정규학기(초과학기자와 동일하게 납부)			
	수강 학점	납부 금액		
	1-3학점	수업료의 1/6 납부		
등록금	4-6학점	수업료의 1/3 납부		
납부 여부	7-9학점	수업료의 1/2 납부		
및 금액			등록금 미납부	
	(2) 계절수업(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납부)			
	수강 학점	납부 금액		
	1학점당	107,900원		
등록금 납부 기간	초과학기자 등록기간(3,9월 중)에 납부			

유예 기간

- 1개 학기 단위로 재학연한 이내에서 계속 신청 가능
- ※ 유예를 연장하려는 경우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유예를 미신청하거나 재학연한 마지막 학기인 학생은 자동 졸업 처리됨
- ※ 재학연한은 KUPID 포탈 로그인 > 학적/졸업 > 학적사항 조회에서 확인

기타 사항

- 1. 도서관/열람실 등 이용 권한은 기존 수료자의 권한과 동일하게 처리 예정
- 2. 발급 가능 증명서는 수료자와 동일,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인서'만 추가 발급
- 3. 유예 상태로의 학적 반영은 매학기 3월 1일, 9월 1일에 처리되며 유예 학기 중 졸업예정증명서도 3월 1일, 9월 1일부터 출력 가능

유예 중 주요 증명서 발급 여부		
졸업예정증명서	걸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수료증명서	2670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졸업증명서	큽 칠기	

2025년 1월 유예를 신청하여 승인되는 경우 2025년 3월부터 **'8월에 졸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 중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취업 및 대학원 진학 등 추후 계획을 신중히 고려하여 유예 신청 요망

유예 조건(공통)

불가사항

- 유예기간 중 휴학 신청 불가
- 유예 신청/미신청 후 해당 학기 유예 번복 불가
- 유예 신청 후 해당 학기 유예 유형 변경 불가
- 다중전공·복수전공의 신청·변경 및 포기 불가
- 캠퍼스간 혹은 캠퍼스내 전과 신청 불가
- 취득학점 포기 신청 불가
- 수강과목에 대한 이수구분 변경 및 대체 인정 불가
- 국내외 학점 교류 등 신청 불가

(단, 수강유예자의 <u>수강 포기</u> 및 <u>수강 정정</u>, 유예 중 <u>마이크로디그리 취득</u>은 가능함. 단 일반 초과학기자와 동일하게 수강 포기하더라도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유예 조건(수강유예)

구 분	내 용
유예조건	- 수강유예자는 유예를 허가받은 정규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해야 하며, 정규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한 경우에만 직후 계절 수업에 9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단, 유예 상태인 자는 졸업예정자 신분이므로 계절 수업에는 현장실습 교과목·동하계대학 교과목 수강 불가) - 수강유예자는 신·편입생 수강신청기간에 맞추어 수강신청하며 이외 다른 일자에 수강신청한 내역은 모두 자동 삭제됨 - 유예기간 중 수강하는 과목은 P(Pass)/F(Fail) 방식으로 평가하며 취득한 학점은 총 졸업학점에 반영됨 - 학·석사연계 합격생의 경우 유예기간 중 대학원 교과목 수강 불가함 - 유예학기에는, 기수강한 과목에 대한 재수강 및 유사과목 수강 모두 불가(유예학기에 수강한 과목을 다음 유예학기에 재수강하는 것도 불가) - 최초 유예 확정 시점의 졸업사정 기준으로 졸업 내역이 반영되므로 유예 중 교직 과목·심리학부 교과목(이학사)을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실제 졸업 시 교원자격증·심리학부 이학사 수여 불가(유예 전, 이미 해당 학위 수여에 필요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상태여야 함) - 수강유예자는 초과학기자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수강신청 학점이 0학점이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기는 미수강유예로 전환됨

02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학기) 7월 초 ~ 7월 말 (2학기) 1월 초 ~ 1월 말

- ※ 정규학기 성적 확정 및 재수강과목 삭제 반영일 이후 ~ 직후 계절수업 성적 확정 및 재수강과목 삭제 반영일까지이며 자세한 날짜는 매 학기 말 KUPID 포털 <학사일정> 게시판에 공고 예정
- ※ 직후 계절수업 성적까지 포함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예정인 경우신청기간 내 미리 유예 신청 가능하며, 계절수업 성적 확정 이후에는 신청기간이 여유롭지 않으니 유의하여 기간 내 신청 필요
- ※ 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추후 졸업사정 시 졸업이 불가한 자로 판정되는 경우 유예 신청이 취소됨

신청 방법 KUPID 포털 > 학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 신청 기간이 도래해야 메뉴 확인 가능
- ※ 신청내역 조회: KUPID 포털 > 학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조회

신청화면 예시



02 신청 방법



02 신청 방법

수강신청 가능학점

수강유예시 (정규학기) 최대 19학점, (계절수업) 최대 9학점

※ 수강유예자는 유예를 허가받은 정규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해야 하며, 정규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한 경우에만 직후 계절수업에 9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1) 정규학기(초과학기자와 동일)

수강 학점	납부 금액
1-3학점	수업료의 1/6 납부
4-6학점	수업료의 1/3 납부
7-9학점	수업료의 1/2 납부
10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납부

- * 초과학기자와 동일하게 수강 포기하더라도 등록금 반환 불가
- ** 유예자는 초과학기자와 달리 휴학이 불가하므로 유예학기 중 유예를 취소하거나 등록금 환불이 불가하니 신중히 신청 요망

(2) 계절수업(일반 재학생과 동일)

수강 학점	납부 금액
1학점	107,900원
2학점	215,800원
3학점	323,700원

- * 계절수업 수강을 중도 취소하는 경우 일반 계절수업 수강자와 동일하게 등록금 반환함
- ** 유예 상태인 자는 졸업예정자 신분이므로 계절학기에는 현장 실습 교과목 및 동하계대학 교과목 수강 불가

※ 수강유예 승인 후 수강신청 학점이 0학점이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기는 미수강유예로 전환됨

02 신청 방법(수강유예)

수강신청 기간 신·편입

신 · 편입생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

- ※ 이외 **다른 일자에 수강신청한 내역은 모두 삭제**되며, 기수강한 과목에 대한 **재수강** 및 **유사과목** 수강신청 내역도 모두 삭제됨
- ※ 학·석사연계 합격생의 경우 유예기간 중 대학원 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등록금 납부 기간

초과학기자 납부기간과 동일(3월/9월 초중)

※ 수강유예 승인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기는 미수강유예로 전환됨

기타 유의사항

- 1) 유예기간 중 수강하는 과목은 P(Pass)/F(Fail) 방식으로 평가하며 취득한 학점은 총 졸업학점에 반영됨
- 2) 최초 유예 확정 시점의 졸업사정 기준으로 졸업 내역이 반영되므로 **유예 중 교직 과목·심리학부 교과목(이학사)을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실제 졸업 시 교원자격증·심리학부 이학사 수여 불가(유예 전, 이미 해당 학위 수여에 필요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상태여야 함)
- 3) 수강유예자는 해당 학기 학사경고에서 제외됨